

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26日(月) 午前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10時04分 開議)

○委員長 安傑瑢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북구의 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0時05分)

○委員長 安傑瑢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한 성북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鄭顯植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안건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한진 아파트 축대 붕괴 사고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다 하는 말

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에 즈음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방 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 성북구 구유 재산 관리 조례에서 상세하게 관리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6월 30일 구유재산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구 재산에 사용 효율이 상당히 인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유 재산 관리 조례도 이와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또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때에는 그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게 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보존하기 적절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할 때에 우리 구 조례 관계 규정이 국유 재산법에 정한 바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또한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첫째 구유재산에 대한 효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에 사용효율을 '81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의 경우는 1000분의 25로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립된 건물은 1,000분의 50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립일

에 관계없이 그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해서 인하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재산중 공장 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연 8% 이자를 붙여서 5년 동안 분할 납부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존하기에 적절하지않은 재산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준을 총 중래에는 시외의 지역의 경우에 400평방미터 이하이던 것을 앞으로는 700미터이하의 토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구 재산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고 또한편 국공유 재산 관리에 관해서 우리 국법 체계상 상위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관련 법체계 정비에 관한 내부부의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傑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崔石根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安傑瑤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큰 항 주요골자중에 한문항 보존 부적합한 재산,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이외에 지역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시 이외의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항이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넣은 것인지 설

명해 주시고 그 위로 올라가서 2항입니다. 공장 용지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을 5년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역에 국공유지 분할 상환 문제는 5년에서 10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신설을 하면서 5년 분할을 10년 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히 경제 살리기로 해서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瑤 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俞鎮武委員 지금 1항에 보시면 1,000분에 25로 한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찾아서 하는 얘기인지. 또 둘째항에 보면 5년 분할 8%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20년 분할로 하고 연 5%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400 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하는 것인지 이왕이면 4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좀 간단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傑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서화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化錫委員 '81년 4월 30일 이후에 주요 건물 사용료 요율 적용이 1,000분의 50에서 25로 균등적용이 되는데 얼마나 건물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의 감소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것인데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委員長 安傑瑤 네.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간단하게 요점만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울특별시내에 매각대상에 평방미터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財務局長 鄭顯植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수

영위원님께서 보전 부적합한 토지가 재산이 무엇이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 외적인 경우가 우리 성북구의 경우 관련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장용지를 분할납부하도록 하는데 재개발지역 내의 구유재산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전 부적합한 재산이 무엇이나 하는 데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 올려서 이것은 잡종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정 목적이거나 기타 공공용에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고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땅을 여기서 보전 부적합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외 지역이 우리 서울에 있는 성북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외 지역이라도 우리 성북구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재산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분의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 관내에 없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채권 확보상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경우에 그 지상에 이러한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그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날을 보고 이번에 이러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를 쓰겠다고 사는 사람에게는 분할납부하는데 우리 서민이 주거환경을 좀 높여서 양질의 수준에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움의 길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혜택을 주도록 이번에 정례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재 재개발지역에 관해서는 여러 각계각층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의 부담능력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진무위원님께서 사용 효율을 25/1000로 하는 근거가 무엇이나 하는 말씀과 400㎡이하를 700㎡로 원하는데 기왕이면 좀 더 범위를 늘려서 1000㎡이하로 할 수 없

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다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통일되게 효율을 25/1000로 그리고 면적기준을 700㎡이하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주민은 이러한 대접을 받고 또 다른 지역의 주민은 다른 기준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국에 통일된 기준으로 하는 상위법령인 조례 시행령이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화석위원님께서 사용효율을 25/1000로 인하하는데 그 대상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과 이 경우에 우리가 사용료가 감소가 될텐데 그 감소의 경우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거용 건물이 있는 우리 구유재산이 독립되게 파악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끝 숫자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1,600여건이 있다, 우리 구유지상에. 그리고 금액규모는 현재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마다 감정을 해서 정하기 때문에 미리 얼마라고 말씀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정상적인 사용효율에 약 10%가 감소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瑯 김진권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鄭顯植 김진권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이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바를 제가 낭독을 함으로써 답변에 같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자치단체가 그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또 특정 건물 정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가 그 첫번째 대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좁고 긴 모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갖춘 폐도나 폐구거나 이런 것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어가지고 같은 사람 토지 사유에 위치하거나 기존의 공단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등에 해당

되겠고 그다음에 일단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건물이 있는 토지 그리고 이 경우에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가 되는 토지로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자치단체는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이 좀 산만하게 됐습니다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安傑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위원장님.

○金壽榮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을 5년 분할 납부규정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국공유지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재개발지역 규정에는 종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했다면 5년 분할 납부규정을 신설하는데 기히 신설하면서 10년으로 하면 어떠냐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게 아니냐 그런 식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鄭顯植 고맙습니다. 기왕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공장용지로 쓰는 토지에 대해서 10년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모든 자치단체 법 체계는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또는 우리 구의회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 재산관리조례나 이런 데 일괄되게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壽榮委員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최석근 전문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무관리과 사항의 문제도 한 번 우리가 유보시켰다가 통과시킨 것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법률에 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률에 우선해서 어떤 규정을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도 거기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나면 상위조례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5년으로 못 박혔으면 지방자치단체가 10년으로 했을 때는 그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겁니까?

○專門委員 崔石根 서울시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성북구조례도 5년으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높이면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마찬가지입니다.

○金壽榮委員 그러니까 5년을 4년, 3년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도. 딱 5년입니까?

○專門委員 崔石根 그게 상위법에 적게 해도 안 되고 많이 해도 안 되죠, 그것은. 거기 맞게 해야 됩니다.

○金壽榮委員 이것은 3년, 4년을 두고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구의원들이 거수기박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傑瑤 김수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
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3分 散會)

○出席委員 14人

徐 化 錫	朴 時 俊	金 壽 榮
丘 在 永	高 允 根	崔 東 煥
崔 桂 洛	尹 弘 老	尹 晚 丸
俞 鎭 武	柳 成 烈	申 宗 鉉
安 傑 瑒	金 振 權	

○缺席委員 1人

宋 夏 星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鄭 顯 植
財 務 課 長	元 在 雄